

# IFRS 적용실무 해설 (6)

이 자료는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의 각 주제별 담당자들이 해당 이슈별로 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며, 향후 2~3년 간 IFRS 도입시점까지 이슈를 주제별로 소개할 계획이다. <편집자 註>

## 1. 영업부문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8호

부문별 공시에 대한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기업 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0-87] '사업부문별 정보 등의 공시'가 있으나,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과 차이가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기준서 제 1108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최고경영의사결정자의 파악

기준서 제1108호는 경영자가 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업의 부문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공시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즉, 기업의 자원을 배분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최고경영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 되는 내부보고서에 근거하여 부문의 재무정보를 공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최고경영의사결정자의 파악은 필수적이다. 최고경영의사결정자는 직함에 관계없고, 반드시 사람일 필요도 없으며 특정 그룹이 될 수도 있다. CEO가 될 수도 있으며, 이사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경영진이 결정한 사항에 대한 승인기능만 있고, 자원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감독기구는 최고경영의사결정자가 아니다. 한편, 해석[50-87]에서도 사업별 부문은 경영자가 경영부문별로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구분한 단위로 정의하며 경영자를 언급하고 있으나, 경영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고, 경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공시할 부문별 정보가 달라지지 않는다.

### (2) 영업부문의 파악

기준서 제1108호에 의하면 영업부문은 수익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최고경영의사결정자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한 단위이다.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거나 기업활동에 부수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본사나 일부 직능부서는 영업부문이 될 수 없으나, 본사나 일부 직능부서라고 하더라도 앞에 언급한 영업부문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영업부문에 해당된다. 한편, 해석 [50-87]은 사업별 부문 결정시 경영자가 통상적으로 사업별 부문의 구분방법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사업별 부문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별 분류가 산업별 분류와 유사하게 이해된 측면도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해석[50-87]에 따르면 사업별 부문으로 분류되기 어려울 본사나 일부 직능부서도 기준서 제 1108호에 따르면, 영업부문으로 분류될 수 있다.



### (3) 부문정보의 측정

기준서 제1108호는 최고경영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된 금액을 그대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문의 재무 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재무정보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정보로 변환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해석 [50-87]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액을 공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기업회계기준 제79조의 오류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 표시되는 전기의 부문별 재무정보도 수정하여야 한다.”라는 언급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부문별 재무정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기준서 제1108호의 주요사항과 관련하여 이의 적용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업의 자원을 배분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최고경영의사결정자의 파악이 공시할 영업부문을 올바르게 판단하는데 결정적이므로, 최고경영의사결정자의 파악에 유의한다.
- 많은 영업부문이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한다. 예를 들어, 일부 직능부서나 본사와 같은 다른 부문들도 최고경영의사결정자가 구분된 재무정보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면, 영업부문이 될 수 있다
- 공시해야 할 재무정보로 인한 영향을 고려한다. 공시해야 하는 영업부문 중에는 기업에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준서 제 1108호에서는 이러한 정보의 공시를 면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작성 :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김인영 회계사

## 2. 차입원가 (IAS 23 Borrowing Cost) 지배·종속 기업간의 자금거래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금융비용자본화와 달리 2007년 3월 IAS 23 Borrowing Cost의 개정으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차입원가의 당기비용 처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이 반영되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3호 ‘차입원가’가 공표되었으며, 경과규정(문단 27-28)에서 이러한 개정에 의하여 차입원가의 자본화에 대한 회계원칙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화 개시일이 시행일 이후인 적격자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일 전에 특정일을 지정하여 자본화 개시일이 그 특정일 이후인 모든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이 기준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최초채택기업은 개별 기준서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 기준서의 내용을 소급 적용하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에서 차입원가와 관련한 면제항목(문단 25I)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최초채택기업은 기준서 제 1023호의 경과규정을 준용하여 2009년 1월 1일과 전환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이후에 자본화 개시일이 도래하는 적격자산에 적용하거나 이전의 특정일을 지정하여 자본화 개시일이 그 특정일 이후인 모든 적격자산에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3호를 적용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중 지배·종속기업간 자금거래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아래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종속기업 S는 지배기업 P로부터 자금을 차입을 하여 공장을 건설하는 중이며, 지배기업 P는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종속기업 S에게 그 자금을 대여한 것이다. 지배기업 P와 종속기업 S의 다양한 재무제표에서 이러한 차입원가는 어떻게 회계처리되는가?

### (1) 종속기업 S의 재무제표

종속기업 S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적용해야 하며, 자본화 되는 금액은 종속기업에서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이다. 즉, 종속기업 S의 재무제표에는 지배기업 P를 제삼자인 것처럼 간주하여 지배기업 P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자본화 적용하는 것이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 제1039호에 따라 산정된다.

### (2) 지배기업 P의 별도재무제표

지배기업 P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회사 S에 대한 투자지분은 개별자산으로 인식되어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로 평가될 것이며, 이는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 자산이 아니다. 따라서, 자본화하는 차입원가는 없다.

### (3) 지배기업 P의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에서 차입원가의 자본화는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종속기업이 계상한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연결실체 관점의 차입원가를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연결실체 관점에서 공장의 건설과 관련하여 특정차입금을 이용하였다면 종속기업에서 실제 발생되고 자본화된 차입원가가 이 특정차입금의 차입원가와 다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결국, 자본화되는 차입원가는 연결실체관점에서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지배기업 P가 외부

차입을 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종속기업 S가 지배기업 P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해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작성 :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이수미 이사

## 3.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 공정가치

K사는 거래처인 B사에 1,000만원을 무이자 부 조건으로 5년 동안 대여하고 장기대여금으로 분류함. A사가 무이자로 대여해 준 이유는 B사로부터 미래에 구입하게 될 재화나 용역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받는 등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임.

위 장기대여금 최초 인식시점의 유사한 5년 만기 대여금에 대한 시장이자율은 10% 임.

위 사례의 경우 A사의 장기대여금의 최초 인식시점에 인식하여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인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는 그 대가로 주거나 받은 거래금액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금액이 반드시 그 공정가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장기수취채권의 경우는 그 거래금액에 공정가치가 아닌 다른 대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무이자 부 장기수취채권의 최초 인식할 공정가치는 거래금액과는 별도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장기대여금이나 장기수취채권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유사한 신용등급을 가진 유사한 금융상품(통화, 기간, 이자율 유형 및 그 밖의 요소에 관하여 유사함)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미래 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거래금액에



서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한 공정가치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어떤 다른 형태의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039호 AG64)

A사의 경우, 대여한 거래금액 1,000만원은 두가지 요소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5년 후에 수령할 1,000만원을 대여시점의 유사한 금융상품의 시장이자율인 10%로 할인하여 계산되는 621만원을 당 대여금의 최초 인식할 공정가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거래금액 1,000만원에서 공정가치 621만원을 차감한 379만원은 B사와의 거래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금액은 그 공정가치가 되어야 하므로 위 경우 대여금으로 최초 인식할 금액은 621만원이 될 것이며, 5년 동안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면서 5년 후에 상환 받을 금액인 1,000만원으로 조정되어 갈 것이다.

거래금액과의 차액인 379만원은 현금 등 금융자산이

아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위해 지급되었으므로 금융자산은 아니며, 다른 기준서에 따른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A사의 경우 다른 자산요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로는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8호에 따른 무형자산, 2) B사가 A사의 종속회사라면,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의 일부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그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공정가치와 취득부대비용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기준서 제8호 단락 17), 대여금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에서의 금융상품의 범위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유가증권의 범위보다 넓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 금융상품의 정의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해서도 거래금액이 아닌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를 별도로 추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종업원에 대한 무이자대여금에 대해서도 유사한 회계처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 

작성 :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김수원 회계사

## 시 사 경 제 용 어

### 멜라민(Melamine)

지난 28일 오후 중국산 **멜라민** 관련 유통판매 금지 식품 리스트가 공개되자 '멜라민 공포'는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28개의 품목을 발표하며 "유통판매 금지 식품은 검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구입하지 말고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나 1399로 신고바랍니다"라고 알렸다.(2008. 9. 29, 한국경제)

멜라민이란 질소함량이 풍부한 흰 결정체의 모양으로 많이 발견되는 유기물로서 주로 플라스틱, 접착제, 주방용조리대, 접시류, 화이트보드, 화학비료에 사용됩니다. 멜라민이 첨가된 화학물에 보통 존재하는 시아누르산(cyanuric acid)와 결합하여 신장에 결석을 일으키게 됩니다. 멜라민으로 이루어진 작은 결정체들이 신장에 존재하는 소변이 지나가는 작은 관을 막게 되고 이것이 소변의 생성을 막게 되어 신장기능이 약화되며 어떤 경우에는 사망하게 됩니다. 동물실험에서 멜라민은 암유발효과도 가지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